

7. 부가가치세법중 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제정경제원공고 제1998-11호 1998. 1. 15.

개 정 이 유

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의 자금차입과 관련한 세수보전대책의 일환으로 국제기준에 맞지 않거나 과세상의 형평제고가 필요한 부가가치세의 면세 범위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.

주 요 내 용

가. 학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동차학원, 문리분야학원중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학원 등 인문사회계열학원과 경영실무분야학원중 서비스계열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을 부

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함.

나. 변호사·공인회계사·세무사·관세사·건축사·기술사 등이 제공하는 인정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함.

주택회보